입영일자 연기

입영신청 절차 및 복무기간

입영신청 공지사항

입영일자 연기

입영안내 길잡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입영희망

상근 예비역제도 안내

귀가자 처리안내

입영일자 연기

개요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mark>입영일자를 연기하는 제도</mark>

신청대상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아래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단, 입영일자/입영부대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질병, 직계 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mark>행방불명, 각</mark> 군지원 사유자는 제외) 처리 제한

신청시기

입영일 5일전까지 신청이 가능

신청기관

지방병무청 현역입영부서(현역입영과, 병역판정입영과, 병역관리과)

우편으로 제출시는 병무청 「병무민원포털-신청서/구비서류」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바로가기** 를 다운받아 해당란 기재한 후 입영통지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지 청)으로 송부

입영일자 연기사유, 연기기간 및 구비서류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와 함께 아래 사유별 구비서류를 <mark>첨부하여 제출하면 통산 2년의 범위안에서 연기</mark>

입영일자 연기 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음(단, <mark>질병 또는</mark> 심신장애, <mark>천재·지변 기타 재난, 행방불명, 취업자(24세 이하 취업)는 제외</mark>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서류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핸드폰 등으로 개별 통보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및 첨부서류

연기사유	OH ZI ZIZI	구비서류	
	연기기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질병 또는 심신장애	9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다만, 28세 이상자로서 연기 기간 중사회통념상 질병치료에 어긋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질병으로 연기 제한	병무용진단서	-
가족위독, 사망 등 가사정리가 필요한 때	3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그 사유가 계속될 때는 30일의 범위내에서 다시 연기(통틀어 60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천재·지변 기타 재난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 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파생되어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포함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자로 고발 후 사유해소시까지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	-	주민등록등(초)본
각군 모집시험 응시	현역병 입영일자 30일전까지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연기.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하여 그 수험 또는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선발결과 발표 시까지 연기(장교, 부사관 등으로 선발된 사람은 그 입영일자까지 다시 연기). 다만, 한 차례만 연기하되 1차와 2차(체력검사, 면접 등)를 구분하여 응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발 여부를 확인하여 연기지원에 의하여 군 선발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선발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그 입영일자까지 한 차례만 연기(군 지원 사유로 한차례 입영일자를 연기받은 사람 포함)	접수증 또는 수험표 (장교, 부사관 등)	각 군 지원 사항 (일반 모집병)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거나 24세 이하자로	국외이주허가를 받은 사람은 1년의 범위에서 연기하고 그 연기기간을 초과한 사람으로서 출국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6개월의 범위에서 다시 연기(30세 초과자는 30세까지)	-	여권발급 정보

CH TILLO	Malalal	구비서류	
연기사유	연기기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출국대기 또는 출국 (국외체재)	여권을 발급받아 입영일 이후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6 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해당 사유 연기 후 출국 하지 않은 사람은 이후 동일사유 연기 제한) 입영일 이전에 출국(예정자포함)하여 국외체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별표1 제1호 가목 3)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를 제한 받는 사람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변경이 곤란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기(연기 후 미출국자는 이후 동일사유 연기 제한) * 참고 사항: 단기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한 사람(25~27세)으로서 부득이하게 입영일 이후까지 단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사유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각급학교 입학시험 응시	대학진학(중·고교 진학·복학예정자 포함) 예정자는 21세가 되는 해의 5월말까지 연기하되 이에 더하여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2세가 되는 해의 5월말까지 연기	졸업·수료(예정) 증명서 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등	-
	대학원진학 예정자(박사과정 수학예정자 포함)는 대학(원)을 졸업(예정)하는 다음 해 5월 말일[후기에 졸업(예정)자중 다음 연도 후기 진학예정자는 다음해 10월 말일]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28세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졸업·수료(예정) 증명서 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등	-
	대학 편입학 예정자는 대학수료 또는 졸업 다음해 5월 말일 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졸업·수료(예정) 증명서 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등	-
자녀출산·양육	친권자가 6세이하(태아 포함, 미혼자의 경우 자녀 또는 자녀의 모와 의무자가 같은 주소에 있는 경우에 한함)의 자녀양육 사유 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하여 통틀어 2 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다만, 28세 이상자는 1년 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연기사유	연기기간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자 확인사형	
형제 동시복무	형제가 동시에 현역병(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포함), 상근예비역 소집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하게될 경우 희망하 는 1인은 입영일자 연기 범위내에서 복무자의 전역시까지 연 기 28세 이상자는 복무중인 형제의 잔여 복무기간이 입영일 기준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연기	가족관계증명서	형제 병역사항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단체 포함) 에서 시행 하는 채용시험 응시	3회에 한하여 채용시험 일정까지 연기(2회 이상 연기시는 이전 시험 응시 여부 확인 후 연기)	시험접수증(수험표)	시험응시 여부 또는 1차 시험 합격 여부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단체 포함) 에서 시행하는 자격·면허시험과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 응시	1회에 한하여 자격(면허)시험 일정까지 연기 다만, 시험 시행주기가 연1회인 자격/면허시험에 재차 응시한 사람은 2회까지 연기가능(2회 연기시 이전 시험 응시 여부 확인 후 연기)당해연도 1차시험 합격자로서 이어서 시행하는 다음 해의 2차시험 응시예정자는 원에 의해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운전면허시험 등 상시 또는 연중 접수하는 자격·면허시험응시자는 연기 비대상(상시시험을 시행하는 동일종목의 정기시험도 연기 비대상) 28세 이상자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시험 응시 연기 비대상시험 주기가 연 1회인 자격,면허시험에 접수한 사람은 동일 시험에 한정하여 2회까지 연기하되(2회 연기시 이전 시험 응시여부확인 후 연기) 입영일 이전에 접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경우는 접수일정까지 연기 후 접수여부확인,추가연기	시험접수증(수험표)	-
공무원 채용 후보자	공무원 채용 후보 등록한 사람은 1년의 기간내에서 연기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
연수원 수련 등	회계사, 변리사 등의 시험에 합격하여 연수(수련) 예정인 사람이 나 연수(수련)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연기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

연기사유	CH 21.21.21.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연기기간		
검정고시 응시	검정고시 접수자는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2회 이상 연기시는 이전 시험 응시 여부 확인 후 연기) 28세 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시험접수증(수험표)	-
의사 ·한의사 시험 등 응시 예정 자	의사(치과의사 포함), 한의사, 수의사, 약사(한약사 포함) 면허시험, 유치원 초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우 관련 대학(원) 졸업 등해당 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후 시험응시 예정인 사람은 원에 의해 1년의 범위에서 연기(2회 이상 연기시는 이전 시험 응시 여부확인 후 연기)	시험 접수증 등	-
직업훈련원생 재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지정(허가) 직업훈련 시설(법인)에서 교육비훈련수당 등을 지원받는 과정에 재원중 인 사람으로 매일(주말 제외) 4시간 이상 수강하는 경우 한 차 례만 졸업(수료)시까지 연기 28세 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재학(원) 확인 자료	-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학력이 학사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 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출석수업 형태(감염병 예방 등을 위 해 비대면수업으로 전환된 경우 및 학기 중 출석수업이 1회 이 상 필수인 원격수업 포함)로 수강중인 사람은 한 차례만 연기 28세 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재학증명서 수강신청 확인서 등	-
졸업예정자	각급학교(2년제대학 이상) 1년이내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로 서 학업 계속 희망자는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의 범위 (대학 2년제 과정 23세, 3년제 과정 24세, 4년제 과정 25세, 5 년제 과정 26세, 6년제 과정 27세, 의과·약학 대학 28세, 석사학 위 2년제 과정 27세, 2년제 초과 과정 28세, 의과·약학 대학원 29세, 박사학위 과정 29세, 연수기관은 27세)에서 졸업시까지 연기(휴학자 제외)	재학(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

연기사유	CH T L L L	구비서류	
	연기기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취업자(24세 이하 취업자)	5인이상 사업장에 통상근로자로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연기, 다만 청소년유해업소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일 부 업종은 제외	재직증명서(병무청 서식) 사업자등록증 등	-
취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취업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영일자 연기 범위에서 연기(이 경우,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제25조 제3항을 준용한다)	재직증명서(업체 서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창업	-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
	벤처기업(예비)창업가, 정부부처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한 사람	벤처기업확인서 예비벤처기업확인서 창업지원사업 선정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창업가(대표자), 정부부처의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에 참여한 사람	사회적기업 인증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기업육성사업 협약서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최·주관 창업경진대회(소셜벤처·사회적기업 경연대회 포함) 포상 순위 3위이내 입상한 사람	경진대회 입상 증명서	-
	훈격이 대통령상 이상인 창업경진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한 사람	경진대회 본선 진출 사실 확인 서	-
	창업아이템과 관련한 본인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보유한 사람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사람	벤처캐피탈 투자 사실 확인서	-
잠복결핵치료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으로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통틀어 2회, 1년 범위내)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치료확인서	-

연기사유	CH 21.21.21.	구비서류	
	연기기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기타 부득이한 사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3개월의 범위에서 연기, 연기사유가 계속되는 등 필요할경우 동일 사유에 한하여 3개월 범위에서 1회 추가 연기(통틀어2회, 6개월 범위). 다만, 28세 이상인 사람으로 지역 또는 기관의 홍보대사 등 홍보활동의 경우 연기 제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참고사항

입영(소집)기일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화 등으로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전환복무(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 연기되지 않고, 전환복무 선발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관련)

지방병무청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	02-820-4283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242
부산울산지방병무청	051-667-5246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242
대구·경북지방병무청	053-607-6245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241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248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41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411	인천병무지청	032-454-2245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445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242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43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42